

보도일시 (인터넷) 2023. 6. 27.(화) 11:00,
(지면) 2023. 6. 28.(수) 조간

배포 2023. 6. 27.(화) 06:00

권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등 마련

-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월 28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이 6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갖추고 보전가치를 지닌 해양자산이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해양생태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절차와 기준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 중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여가능성,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운영실적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무리되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김영주 (044-200-5313)

참 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 추진 배경 및 경과

-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해양생태 교육·체험 등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의 등을 규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22.12.27. 공포, '23.6.28 시행)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부처협의('23.3.8 ~ 3.21.), 입법예고(3.21. ~ 4.30.), 법제처심사(5.25.)

□ 주요 내용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는 지정기준을 정함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

-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u> <u>1.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u> <u>2.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u> <u>3.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대</u>

책의 시행실적이 뛰어날 것

4. 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
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
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
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
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